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054호	조정훈의원	2025.8.8.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5.9.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2.26) 상정
	제6898호	고민정의의원	2024.12.24.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2.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7.22) 상정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2.26) 상정
	제15633호	김민전의의원	2025.12.26.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2.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2.26) 상정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3.12.)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6.3.24.)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검사 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있음.

한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무분별한 외부 공개에 대해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도한 경쟁 및 서열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학생의”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로, “통지할 수 있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부장관·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2.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7조2항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교육관련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의 목적으로 개인, 학교, 지역 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u>학생의</u>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 ----- ----- ----- ----- ----- -----제2항에도 불구하고 <u>학생의</u> ----- <u>통지하</u> <u>여야 한다.</u>
<신 설>	② <u>교육부장관 ·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u> 1.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2.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7조2항에 따라 학습지원대상

② (생 략)	<u>학생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 우</u> 3. 「<u>교육관련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u>」 제8조의2의 <u>목적으로 개인, 학교, 지역 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 제 공하는 경우</u> 4. <u>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 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u> 5. <u>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 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